#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1142 2023년 9월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일자: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23년 9월 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)

가. 제안이유

•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이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명확화(안 제2조제2항).
- 위원회 직무대행 규정 신설(안 제2조제4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분쟁조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혐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 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3. 6. 15.~7. 5.) 결과: 붙임

(2) 신・구조문 대비표: 붙임

#### 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박귀수)

#### 가, 개요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") 개정사항('23.3.27)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.

#### 나. 검토의견

 안 제2조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고,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연임 가능 조항은 있으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도 가능한 상황인바,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.

또한, 동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두고 있지 않아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장 부재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2조의2와 제3조는 위원 해촉과 위원회 사무처리 등의 규정에 대해 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를 토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#### <안 제2조(위원회 구성)의 주요 내용>

현행	개정안
② 위원회 위원의 암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암기는 전암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②한 차례만 연임 전임자 임기
<u>&lt;신 설&gt;</u>	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"(위원회 구성)"을 "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연임"을 "한 차례만 연임"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전임자"를 "전임자 임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행정(1)부시장이되고"를 "행정1부시장이 맡고"로, "서울특별시장"을 "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"으로, "서울특별시 환경업무"를 "서울특별시(이하"시"라한다) 환경업무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장"을 "시장"으로, "위원을"을 "해당 위원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중 "심신쇠약으로"를 "심신쇠약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 중 "있는"을 "있거나,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

분)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서울특별시"를 "시"로, "되고"를 "맡고"로, "된다"를 "맡는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원회"를 "위원회에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<u>(위원회 구성)</u> ① (생 략)	제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
	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	2
하되, <u>연임</u>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	<u>한 차례만 연임</u>
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</u> 의 남은 기	<u>전임자 임기</u>
간으로 한다.	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	3
행정(1)부시장이 되고, 위원회의	<u>행정1부시장이 맡고</u>
위원은 「환경분쟁 조정법」(이하	
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 따	
라 <u>서울특별시장</u> 이 위촉하는 자와	<u>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</u>
<u>서울특별시 환경업무</u> 담당 국장급	<u>라 한다)</u> <u>서울특별시(이하</u>
공무원으로 한다.	<u> "시"라 한다) 환경업무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
	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
	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
	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
	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
	를 대행한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2조의2(위원의 해촉) <u>위원장</u> 은 위	제2조의2(위원의 해촉) <u>①</u> <u>시장</u>
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위원을</u> 해촉할	<u>해당 위원을</u>
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
- 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직무
   2. ----- 심신쇠약으로로 직무

  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 -----
- 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<u>있</u> 는 경우
- 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. (생략)
- 제3조(위원회의 사무처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는 <u>서울</u>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<u>되고</u>,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.
  - ② <u>위원회</u>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.

2 <u>삼선의 탁으</u>
3 <u>ડ્ર</u> ો
거나,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
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
위사실이 있는
<u>&lt;삭 제&gt;</u>
<u>4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
제3조(위원회의 사무처리 등) ①
<u>A</u> ]
맡는다.
<u></u> ② <u>위원회에</u>
•